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0일, 김예지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예지의원)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처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3조의3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현행법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에 대한 별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체계 및 과학적 정책 실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의 최초 시행연도를 달리 정하거나, 주기를 달리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